

교육과정운영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 2016. 6. 23. 개정 2016. 11. 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경대학교의 사명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학생 및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직업기초 교양교육과정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과정의 구성) ① 교육과정은 교양, 직업기초교양, 교직, 전공기초, 전공교과로 나누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

1. 교양교과(인성교육교과, 외국어교과, 창업교과)
 2. 직업기초교양교과
 3. 교직교과(해당학과)
 4. 전공교과(전공기초교과, 전공실무교과, 창업실습교과, 현장실습(CO-OP교과 포함)교과)
- ② 학점의 구성은 2년제 80학점, 3년제 120학점, 4년제 136학점을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 2년제 84학점, 3년제 126학점, 4년제 148학점으로 편성할 수 있다.
- ③ 교양교과는 직업기초교양교과는 2년제 8학점, 3년제 12학점, 4년제 20학점을 편성하여야 한다.
- ④ 교과목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동안 15시간의 이론 강의 및 실험·실습·실기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임상실습 등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편성하고자 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편성할 수 있다.
- ⑤ 실험·실습 시수의 비율은 인문사회계열 40±5%, 자연과학·예체능계열은 60% 이상으로 편성을 원칙으로 하며, 교양교과(직업기초교양 포함), 전공교과목의 편성비율은 교양교과 10%~20%, 전공교과 80~90%로 편성을 원칙으로 하며, 학과사정이 있을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다르게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 ⑥ 입학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은 졸업 시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복학 및 학적이 변동된 자는 복학 및 신규허가 학기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때 이수한 교과목을 입학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으로 인정한다.
- ⑦ 교육과정표는 2년제는 4개학기, 3년제는 6개학기, 4년제는 8개학기, 학점·시간(이론/실습)을 구분하여 편성하고 합계를 기록한다.

제3조(교과목의 구성) ① 교양교과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정하는 직업기초능력과 핵심역량을 함양하고 윤리관 확립을 통한 직업기초직무를 성취할 수 있도록 교과목과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② 직업기초교양이라 함은 모든 산업 혹은 직업에서 기업체의 특성, 성별, 직급 등에 관계없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의사소통능력, 자원관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

능력, 수리능력, 자기개발능력, 대인관계능력, 기술능력, 직업윤리 등을 갖추도록 하는 교과목으로 구성한다.

③ 대학의 교육목표를 수행하고 국가의 산업동향과 지역 산업체 요구분석을 통해 도출된 각 전공의 핵심 직무를 성취할 수 있도록 현장실무 및 NCS 기반 또는 그에 준하는 교과목으로 구성한다

④ 교육과정은 기초학습능력 및 직업기초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양교과목과 비교과 교과목, 현장실무능력 및 전공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전공교과목 및 교직과목으로 편성한다.

⑤ 각 학과의 교육과정은 각 학과별 직무 능력을 달성할 수 있는 이수체계에 맞춰 편성되어야 하며, 교육과정은 학과의 교육목표 및 대학의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제4조(교육과정의 개발) ① 학과는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수요자 요구사항 반영 및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학과 교육목표의 연계성을 포함하여 NCS에 근거한 교육과정을 개발 또는 도입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육과정을 개발하여야 한다.

1. 매년 실시되는 학과교육과정개발위원회의 교육과정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교육과정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개발의 필요성이 인정 되는 경우

③ 대학은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을 위하여 학과에 교육과정편성기준 통보 및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학과는 교육과정개발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학과교육과정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교육과정개발보고서를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과정의 개발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에 부합하여야 하며, 수요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NCS 또는 DACUM(자체직무분석)에 의해 개발한 후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대학평의원회 자문 또는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교육과정의 개편) ① 교육과정의 개편은 기존 편성되어 있던 교과목 중 3개 이내의 교과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개편할 수 있다.

1. 교과목의 학점 또는 시수의 변경이 요구될 경우

2. 교과목의 편성된 학년 또는 학기의 변경이 요구될 경우

3. 교과목의 의미는 같지만 명칭의 변경이 요구될 경우

4. NCS 기반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의 경우 산업체 동향 및 인력 동향의 지대한 변화가 있어 교육과정의 개편이 요구될 경우

② 학과는 제10조(교육과정 자체평가)의 결과에 따라 개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교육과정 자체평가 결과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편할 수 있다.

③ 교육과정을 개편하고자 하는 학과에서는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만족도조사 관련 일체 서류
2. 교육과정 자체평가보고서(개편의 근거 제시)
3. 개편과목별 산업체전문가 의견서
4. 학과교육과정개발위원회 회의록
5. 교육과정 신규대조표
6. 산업체, 재학생, 졸업생 수요조사 결과(NCS 기반 및 현장 중심 교육과정의 경우)

제6조(교양교육과정) ① 교양교육과정은 학과별 인력양성유형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교과목을 중심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1. 대경대학교 인재상 및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교과
2. 학과별 인력양성을 위해 필요로 하는 직업기초교양 교과
3. 기타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과

② 직업기초교양 교과의 개발은 학과별로 교육과정개발보고서 양식에 의하여 개발하여야 한다.③ 교양인성교육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교양교육과정이 개발되었는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④ 기타 비교과 교과목(특강, 학습역량강화 등)을 실시함으로써 직업기초 및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지속적으로 도모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과정심의위원회) ① 대학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과정심의위원회는 교학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NCS지원센터장 및 교수학습지원센터장을 포함한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8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1인 이상은 교육경력이 있는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한 위원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 수립 및 운영정책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사명 및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이 연계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
3. 학과별 교육과정개발 및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
4. 교육과정 질 관리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⑥ 교육과정심의위원회는 각 학과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당학과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제8조(교육과정개발보고서의 심의) ① 교육과정이 대학의 교육목표와 규정에 부합하도록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보고서를 기일 내에 교육과정심의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된 보고서에 대하여 별표1 NCS기반 교육과정 편성평가표에 의하여 심의하며,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해당 학과에 보고서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고서의 반려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학과별 부적합으로 판정된 항목이 2개 이상일 경우
2. 학과별 미흡으로 판정된 항목이 5개 이상일 경우

제9조(교육과정 운영) ①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 실무역량강화를 위하여 방학을 이용하여 산업체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원활한 NCS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NCS지원센터를 두며 그 업무와 기능에 대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NCS적용 교과목의 직무능력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정해진 기간 내 작성하여야 한다.

1. 평가계획서 <별표 2.>
2. 진단평가서 <별표 3.>
3. 직무능력평가서 <별표 4.>
4. 평가결과서 <별표 5.>

⑤ NCS교과목 평가에서 성취수준이 미달하는 학생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하여 향상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교육과정 자체평가) ① 교육과정의 질 개선을 위하여 매 학년도마다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학과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학과교육과정개발위원회는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일정에 따라, 재학생, 졸업생, 산업체로부터 교육과정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교육과정 자체평가 및 보고서 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교육과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체평가 항목은 교육환경, 학사지원체제, 교육성과, 만족도 등으로 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교육과정 자체평가 보고서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④ 학과별 자체평가보고서의 평가는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목별 평가점수는 적합 3점, 미흡 2점, 부적합 1점으로 한다.
2. 항목별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점수를 평균값으로 산출한다.

3. 항목별 평균값이 1.5점 미만일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

4. 항목별 평균값이 2.0점 미만일 경우 미흡으로 판정

⑤ 주기적 자체평가 결과에 대하여 개발 또는 개편 여부를 학과별로 공지하고 차기년도 교육과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